
입 법 정 보

2018-14호



목 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5
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5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6
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6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7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7
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7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9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9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5.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7.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4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5
19.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6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6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9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0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1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2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23	
30.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3
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6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7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8
3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9
3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9
3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30
3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4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2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3
43.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33
4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4
45.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4

정부입법 예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7. 30.
- 마감일자 : 2018. 9. 10.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 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기준 개선 필요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9.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세 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및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세판매장 제도를 개선하며,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제반가치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별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 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맞추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을 추가함

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금융·보험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사업자가 자가공급 등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자기생산·취득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추가함
- 다.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재화의 경우 재화의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 라.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로 가액을 구분하도록 함
- 마.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사.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 및 가산세율을 조정함
- 차.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율을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자산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 ~ 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별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0.5% ~ 2.5%,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에 0.3% 포인트를 가산하여 추가과세함.
 - 나. 현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75% ~ 2%를 적용하고 있으나, 1% ~ 3%로 세율을 인상함.
 - 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함.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8. 16.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처분시 공제 금액 전액을 추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

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채납세액 등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 앞으로 된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채납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20%(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방식에서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현행 증여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재산을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세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함.
- 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 마.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함.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 1)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
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
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1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1)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
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 1)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 1)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1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 1)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 1)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 1)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금

지원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도시기금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512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른 기금 출 용자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정 공정을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0조)

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출 용자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31.
- 마감일자 : 2018. 9. 10.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 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신차 교환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중재판정 및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 1)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나.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6)

- 2) 제작결합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 1)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합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 2)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 1) 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2)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 3)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17.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8. 1.
- 마감일자 : 2018. 9. 10.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설치되어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의체(4차산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를 운영 중에 있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존치 실효성도 낮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8.2.8)에서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하에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였기에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삭제(제2장)

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삭제(제5장)

1)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으로 변경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8. 1.

• 마감일자 : 2018. 9. 10.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19.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

● 마감일자 : 2018. 8. 10.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을 추가하고 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에 추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사유를 구분하여 명기(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8. 1.

● 마감일자 : 2018. 9. 10.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함(안 제92조)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

● 마감일자 : 2018. 9. 11.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 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
(제8조제4항제2호 삭제)

-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수·재활용보다 사용 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면제 기준을 삭제함.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로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 현행 재활용 실적만큼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재활용율이 80%을 넘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로 재활용 용이한 일부 품목으로 재활용 못하는 타 품목의 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폐기물로 발생됨에도 재활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 현행 ‘최종단계 제품’의 포장재만 EPR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 거래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업간 거래 포장재도 EPR 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 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 비닐에 대한 재활용업계 지원금 물량이 실제 재활용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EPR 대상 비닐 포장재와 함께 회수 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 의류비닐 등)을 생산

자책임 재활용(EPR) 대상품목으로 전환함.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 예상치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EPR 지원금 소진에 따른 재활용업체 수거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위반 시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식품접객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 타 업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

• 마감일자 : 2018. 9. 11.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유도함.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 현행 전지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만 되어 있어 불명확한 바, 전지류 잔재물에 대한 관리대상 중금속의 종류 및 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함.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2.

• 마감일자 : 2018. 8. 22.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나. 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확대(안 제6조제2항)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안 별표 피해수습지원)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2.

• 마감일자 : 2018. 9. 11.

○ 신고수리 간주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수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제”의 도입(안 제9조의2, 안 제18조의2)

1) 산림·임업분야 교육·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

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3.
- 마감일자 : 2018. 9. 12.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9.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mu\text{g}/\text{m}^3$ 에서 $15\mu\text{g}/\text{m}^3$ 으로 강화(' 18.3.27.)를 고려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국민 건강 보호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설비용량 1.5MW이상 도서지역의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8. 3.
- 마감일자 : 2018. 9. 14.
-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

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 임산 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고자 함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3.

● 마감일자 : 2018. 9. 12.

-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3. • 마감일자 : 2018. 8. 24.
- 업무정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8.3월)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징금 상한금액 규정(안 별표2 제1호나목)
 -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6. • 마감일자 : 2018. 8. 16.
- 대형화·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경상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형화·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경상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30.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8. 6. • 마감일자 : 2018. 9. 17.
-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신설(안 제2조 신설)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

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동 규정에 따른 각 영업의 세부 종류 및 세부 영업별 업무의 범위를 마련,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별표 1)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안 제14조 제1의2호 신설, 제2호 개정, 제3의2호 신설, 제7호, 10호 및 제11호 개정)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 등 새로이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추가 필요
- 2) 이에, 새로이 발생된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의 위임사항에 규정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

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안 제15조 제1의2호 신설, 제8호 및 제11호 개정)

-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로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함.
- 2) 이에, 업무 처리 상 필요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토록 하고자 함

마. 기타 명칭 및 조항변경 및 조항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제1호, 제1의2호, 제3의3호(기존 제3의2호) 개정, 제11호, 안 별표 2 개정)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제5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됨
-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조항,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 근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8. 6. • 마감일자 : 2018. 9. 1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 제15670호,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 따라 교통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 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의 범위를 규정(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제4항 신설)

3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7.

• 마감일자 : 2018. 9. 17.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청회 요청권 신설(안 제22조)

- 1) 공청회가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만 일임되어 있어 당사자들은 배제됨
- 2) 행정청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를 당사자인 국민들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공청회 재개최 의무 규정 신설(안 제39조)

- 1) 공청회의 취지는 정책홍보와 의견수렴 등인데 개별법의 공청회 개최 의무 규정에 따라 1회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많음
- 2) 공청회 종료 후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이 새로 발견된 경우 다시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전문성 강화(안 제28조, 제38조의3)

- 1) 청문과 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음
- 2) 청문과 공청회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확인 위주의 청문에 한해 소속 공무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내실화 도모

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예고의 대상 확대(안 제46조)

- 1) 행정예고의 대상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예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2) 행정예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행정예고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마.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 1)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시 조치 사항은 없음
 - 2) 처분 후 일정기한 내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의 미반영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바. 그 외 공청회와 전자공청회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안 제5조),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안 제14조), 행정처리기간의 명확화(안 제21조, 제35조), 공청회 재개최 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38조), 전자공청회의 단독 개최 허용(안 제38조의2),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고방법 변경(안 제42조),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의 예고방법 명확화(안 제47조)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8. 7.
- 마감일자 : 2018. 9. 17.
-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을 위한 별점 상향조정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별점 상향조정(안 별표 제2호)
- 1) 현재 법령 위반기업에 별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현행 별점수준으로는 불공정거
래를 근절하는데 한계
 - 2)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개선요구에 따른 별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하고, 공표에 따른 별점을 현행 2.5점에서 3.1
점으로 상향 조정함
- 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별점경감 축소(안 별표 제3호)
- 1) 상대적으로 과도한 별점경감 기준을 축소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2) 포상기업에 대한 별점경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교육
이수기업에 대한 별점경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표자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경감점수를 차등 적용함

3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의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경사유 발생 시 영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보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의 지정 신청대상 영업자에 일반음식점영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43호, 2018. 6. 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 시행령 조문의 수정과 인증제도의 주기적 검토 방법 및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3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 나.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별지 제12호의5서식)
 - 다.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900원 ~ 2,500원/1일)(별지 제12호의5서식)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8. 8.
- 마감일자 : 2018. 9. 17.
-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 (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4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10.
- 마감일자 : 2018. 9. 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4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10.

• 마감일자 : 2018. 9. 19

-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 시설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 1) 영업정지, 폐쇄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안 제20조제1항)
- 2)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감면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6항)
-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도지사 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한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 감면(안 별표 5)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안 별표 6)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8. 10.
- 마감일자 : 2018. 9. 4.
-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별표 1)

43.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8. 10.
- 마감일자 : 2018. 9. 19.
- 바둑진흥법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567호 / 시행 2018.10.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바둑전문기사 실력 검증대회 지정(안 제2조)
 - 나.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바둑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단체(안 제5조)
 - 마. 이 영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입단대회(특별 입단제도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둑전문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부칙)

4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8. 10. • 마감일자 : 2018. 9. 3.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 인력 부족에 적시 대응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제15조의2제1항 신설)
 -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신청 절차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 라.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비율을 한시(5년)적으로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별표1 제2호)

45.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7. 23. • 마감일자 : 2018. 9. 3.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아울러,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시함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5조의3)